[양형위원회 제128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]

1. 양형위원회 제128차 회의 내역

○ 일시 : 2023. 11. 10. 16:00

○ 장소 : 곤지암 리조트 회의실

- 주요 안건
 -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권고 형량범위) 심의
 -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) 심의

2. 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
- 양형위원 개임, 위촉장 전수식 개최
- 전문위원 개임, 위촉장 수여식 개최
-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등 방문
- 2022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
- 2023년도 국정감사 수감
- 2023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
-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

3. 전문위원 업무보고

○ 전문위원 제157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

4.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명칭, 권고 형량범위) 심의

가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- 1) 범죄군 명칭 등
 - 가)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범죄군 명칭을 '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' 로 수정할지 여부(적극)
 - 나) 대유형 1(등록권리 침해행위)의 권고 형량범위 중 가중영역의 상

한을 3년에서 4년으로 상향할지 여부(적극)

- 다) 대유형 2(저작권 침해행위)의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할지 여부(소 극)
- 라) 대유형 5(부정경쟁행위)의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할지 여부(소극)
- 2) 심의 결과
 - 위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나. 나머지 쟁점에 대한 심의

- 대유형 3(영업비밀 침해행위) 및 대유형 4(산업기술 등 침해행위)에 대한 심의는 속행
 - 권고 형량범위는 양형인자와 함께 심의하여 확정할 예정

5.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범죄군 명칭, 권고 형량범위) 심의

가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- 1) 대유형 1의 명칭
 - 가) 대유형 1의 명칭(스토킹범죄) 유지 여부(적극)
- 2) 권고 형량범위
 - 가) 대유형 1-2(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)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를 '감경영역 - 10월, 기본영역 8월 - 1년6월, 가중영역 1년 - 3년6월' 로 정할지 여부(적극)
 - 나) 대유형 2-1(긴급응급조치 위반)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를 '감경 영역 100만 원 - 300만 원, 기본영역 200만 원 - 600만 원, 가중 영역 500만 원 - 1,000만 원'으로 정할지 여부(적극)
 - 다) 심의 결과
 - 각 쟁점에 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나.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심의

- 1) 범죄군 등 명칭
 - 가) 범죄군 명칭
 - '스토킹범죄 양형기준'이라는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함
 - '스토킹처벌법위반범죄 양형기준'으로 변경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
- 2) 권고 형량범위
 - 가) 대유형 1-1(일반 스토킹범죄)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
 - '감경영역 8월, 기본영역 6월 1년, 가중영역 10월 2년6월'로 설정하기로 함
 - '감경영역 8월, 기본영역 6월 1년, 가중영역 10월 2년'으로 설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 - 나) 대유형 1-1(일반 스토킹범죄)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
 - '감경영역 100만 원 1,000만 원, 기본영역 500만 원 2,000만 워'으로 설정하기로 함
 - '감경영역 100만 원 600만 원, 기본영역 300만 원 1,500만 원'으로 설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 - 다) 대유형 1-2(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)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
 - 감경영역을 '300만 원 2,000만 원'으로 설정하기로 함
 - 감경영역을 '300만 원 3.000만 원'으로 설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 - 라) 대유형 2-1(긴급응급조치 위반)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
 - '감경영역 6월, 기본영역 4월 8월, 가중영역 6월 1년'으로 설정하기로 함
 - '감경영역 4월, 기본영역 2월 8월, 가중영역 6월 10월'로 설 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 - '감경영역 4월, 기본영역 3월 8월, 가중영역 6월 10월'로 설 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음
 - 마) 대유형 2-2(잠정조치 위반)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
 - '감경영역 8월, 기본영역 6월 1년, 가중영역 10월 2년'으로 설정하기로 함(견해 일치)
 - 바) 대유형 2-2(잠정조치 위반)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
 - '감경영역 100만 원 700만 원, 기본영역 300만 원 1,500만 원'으로 설정하기로 함(견해 일치)

6. 국정감사 국회 요구사항 관련

- 공탁 관련 양형인자 검토 작업
- 양형기준에 있는 '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 및 '상당한 피해 회복

(공탁 포함)'이라는 감경인자에서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음. 즉 공탁 자체는 독립적인 양형인자가 아님

- 공탁 등 경제적 보상에 더하여,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(실질적 피해 회복),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더라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·판단한 결과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참작할 만한 '상당성'이 있는 경우(상당한 피해 회복)라야 함
- 그러나 최근 '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 등의 양형인자가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, 양형위원회는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하여 검토 중임
- 양형위원회는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으며,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 반영 여부도 검토할 예정임

7. 향후 일정

가. 제128-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(속행)

■ 일시 : 2023. 11. 21.(화) 15:00

■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■ 안건: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) 심의